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는 사회보장급여의 직권 신청 등〉  
■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842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 목 차

|                                       |    |
|---------------------------------------|----|
| I . 개요 .....                          |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                  | 3  |
| 1.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는 사회보장급여의 직권 신청 등 ..... | 3  |
| 2. 적극행정 면책 특례 및 인사상 우대 조치 등 .....     | 10 |
| 3. 관계 부처 및 관련 관련 단체 의견 .....          | 14 |



## I. 개요

### 1.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842호)

####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남인순의원 등 13인
- (2) 제 안 일 : 2026. 7. 8.
- (3) 회 부 일 : 2026. 7. 23.

####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라도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는 업무담당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없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어려움.

이에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하여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사회보

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지원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를 중지하도록 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여 보장기관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제8조 및 제21조 등).

##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1.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는 사회보장급여의 직권 신청 등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현행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안 제5조제3항 각 호 신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 서면 없이 금융기관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안 제8조제1항·제2항),

보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수급자가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br>② (생략)<br>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br>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br>대상자가 <u>심신미약 또는 심신<br/>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br/>경우에</u>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br>② (현행과 같음)<br>③ -----<br>-----<br>---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br>-----<br>----- |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  
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  
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 <신 설>

## <신 설>

④ ~ ⑥ (생략)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제7조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1. ~ 3.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실

\_\_\_\_\_

\_\_\_\_\_ . \_\_\_\_\_

\_\_\_\_\_

\_\_\_\_\_

\_\_\_\_\_ .

1.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 .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동의 서면 없이 금융기관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와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서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현행법 제5조2)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도 친족, 「민법」상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등이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실제로 수급자격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급여 제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이하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는 사회보장급여 직권 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의 서면 없이도 금융기관의 장에게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회보장급여는 일반적으로 지원대상자에게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급여 수급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보 부족이나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 하에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은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보장급여가 수급자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금융정보는 개인의 재산 상황과 경제활동을 보여주는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수집과 이용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있고,

특히, 금융정보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한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이기는 하나,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정보수집의 필요성과 침해의 최소성 간 균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 신청 대상 확대에 따라 조회할 수 있는 금융정보등의 범위, 이용 목적, 보관 기관, 열람 권한 및 사후 통지 절차 등을 보다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현행법 제8조제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금융기관등의 장’으로 규정하면서, ‘금융기관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에 비하여 개정안은 금융정보등의 요청대상을 ‘금융기관의 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에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금융기관등의 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sup>3)</sup>이 발의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이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3) 소병훈의원안(제2218296호), 안상훈의원안(제2218326호), 이수진의원안(제2218940호), 박성민의원안(제2219592호)

## 2. 적극행정 면책 특례 및 인사상 우대 조치 등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하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u>&lt;신설&gt;</u> | <u>제53조의3(적극행정 면책 특례)</u><br><u>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제5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u> |
| <u>&lt;신설&gt;</u> | <u>제53조의4(인사상 우대 조치 등)</u><br><u>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u>                                                                                                                    |

|  |                                                                                                                                                                              |
|--|------------------------------------------------------------------------------------------------------------------------------------------------------------------------------|
|  | <u>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u><br><u>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u><br><u>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u><br><u>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u><br><u>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그</u><br><u>밖에 표창 수여 및 포상금을</u><br><u>지급할 수 있다.</u> |
|--|------------------------------------------------------------------------------------------------------------------------------------------------------------------------------|

## 나. 검토의견

- 현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공무원임용령」,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행정규제기본법」 등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표창 및 포상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4),

### 4) 「공무원임용령」

제61조(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표창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행정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2. 균형인사정책 추진 실적이 우수하거나 인사행정 발전에 기여한 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창 실시, 부상 지급 및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1의2.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2. 창의적·도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
3.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

②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기관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수공무원의 선발, 제2항에 따른 우수사례 경진대회의 실시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유공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5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 또는 유공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특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 또는 위기가구의 발굴·지원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 등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법체계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 등의 업무는 국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분야로서 신청주의를 보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업무담당자의 적극적인 판단과 개입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적극행정과는 차별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위기가구 발굴, 직권 신청, 수급자격 확인 및 연계 지원 등의 업무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고 현장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적·제도적 지원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인사상 우대 조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5.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
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 부여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에 따른 포상휴가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사상 우대 조치  
② ~ ④ (생략)

「행정규제기본법」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② (생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또한,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직권 신청은 대상자의 민원 제기, 개인정보 조사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담당 공무원은 이에 따른 감사·징계·소송 등의 부담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담당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일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과도하게 묻지 않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둘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에 대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함.
- (금융위원회) 금융거래정보는 개인의 자산 및 금전적 거래내역 등을 포함하는 민감한 정보로서, 비밀보장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음. 불가피하게 복지급여의 직권신청이 필요한 경우, 명의인 동의의 예외는 긴급하고 예외적인 경우의 지원대상자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부양의무자는 제외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거래정보의 취급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예외적인 금융거래정보 조사·취급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
| 문 의 처        |
| 02)6788-5498 |